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52
----------	-------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최은석 · 김승수 · 박준태
안철수 · 김상훈 · 이종욱
김장겸 · 김선교 · 장동혁
정희용 · 유용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야기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로 한다.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그 밖에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5의3.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

당소득

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 2)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 3)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

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그 밖에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u></p>

<신 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
 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
 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
 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
 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된 소득

7. ~ 9. (생략)

④ (생략)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
 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

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5의3.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주권상장
법인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
당소득

6. -----제5호까지, 제5호
의2 및 제5호의3-----

7. ~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

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생 략)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신 설>

가.·나. (생 략)

3. ~ 8.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 2)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 3)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

나.·다. (현행 가목 및 나목과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

 -----제2호다
 목-----

 -----.

② (현행과 같음)